國家와 警察을 사랑하는
大韓民國在鄕警友會

警友新聞

발행처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우 : 100-82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 화 : 2234-1881 FAX : 2231-7557
발 행 인 : 具 弘 壹 편 집 인 : 李 庸 祥
등록번호 : 문화다05675
창 간 일 : 1970년 12월 13일

☎ 구독안내 : 02-2234-1881 www.ex-police.or.kr 2006년 10월 10일 (화) 제1344호

韓 - 印尼 경우회 교류협약 체결

- 구홍일 · 로스만하디 兩國 회장 우호 협력 다짐 -

우호협력 결연서 서명 후 양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 경우회가 최근 인도네시아 경우회와 우호협력결연을 맺었다.

지난 9월 18일 오전 10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우회관에서 구홍일 한국 경우회장을 비롯한 한국대표단 19명과 로스만하디 인니 경우회장(前 경찰청장)을 비롯한 인니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협력 결연서에 서명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 경우회 및 경찰발전에 기여키로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우호협력 결연식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족자 지역 지진 피해 당시 한국 경우회가 피해를 당한 인도네시아 경우 가족들을 위한 성금 5천불을 기탁한 것과 관련, 로스 만하디 인도네시아 경우회장이 『한국 경우회가 기탁한 성금으로 피해 경우들에게 나누어 줄 대나무집을 짓고 있는데, 9월 말경에 완공예정이니 한국 경우회측에서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양국 경우회가 우호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초청장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구홍일 한국 경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해 왔고, 퇴직해서도 국가와 경찰을 위해 제2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양국 경우회가 이번 결연을 계기로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가 이끌어 주면서 돈독한 우정을 지속시켜 나가자』고 제의했고, 로스만하디 인니 경우회장도 적극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결연식 직후 한국 경우회 임원들은 인니 경찰청을 방문하고 해외출장중인 스탄토 청장을 대신한 운영처장과 환담하고, 한국교민의 안전을 위한 인니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튿날인 19일에는 지난 5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족자」지역을 둘러본 후 피해 警友들에게 제공된 대나무집 현관식에 참석해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즉석에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 당시 이 지역의 피해 警友는 가족을 포함해 430여명으로 그중 3명이 사망하였으며, 피해지역의 붕괴된 주택 대안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나무 집은 1개동을 짓는데 약 350불 정도 경비가 소요되어 한국 경우회 성금으로 14채를 건립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이번 성금 기탁과 교류협약의 체결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경우회로 첫발을 내 딛는 뜻 깊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외국 경우회와의 교류는 구홍일 경우회장의 공약사항으로, 구 회장은 지난 2004년 10월 경선 당시 입후보 연설을 통해 국제 재향경우회간의 유대를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번 兩國 경우회의 우호 결연서 체결이 국제 경우회간 우호교류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니 경우회와 협의하여 아시아 지역 경우회 결성까지 계획하고 있어 전 세계 경우들이 한자리에서 만날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警友會, 불법폭력시위 근절 100만인 서명운동 지속키로

- 2차 광화문 사진전 및 서명운동 큰 호응 -

경우회에서는 지난 8월 전의경 부모 모임과 전의경 동우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역 구내 사진전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후원한데 이어 지난 9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이들 단체들과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2차 사진전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불법폭력시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警友들과 전의경 부모 및 예비역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대로부터 죽봉과 쇠파이프, 그리고 화염병으로 부터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진을 적나라하게 전시하여 그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폭력시위 반대 서명을 받음으로서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큰 혼응을 얻었다.

특히, 경우회는 이번 서명운동과 관련, 지난 9월부터 전국 시도 및 지역회를 통해 회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한편 경우신문에 서명 양식을 게재해 회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누구나 쉽게 서명에 참여케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최근의 폭력시위 양태는 경찰관을 향해 사제 화염 방사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뾰족한 죽봉으로 눈을 찌르고, 물을 끓여 붓는 등 과격화되면서 국가공권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 폭력시위 발생시 최루액 사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전담부대를 투입해 불법 행위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키로 하는 강경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관련기사 2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폭력시위 건수는 줄어 들고 있지만(2001년 215건, 2002년 118건,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작년 77건, 금년 7월말까지 30건) 시위가 과격화되면서 경찰 부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1년 673명, 2002년 287명, 2003년 749명, 2004년 621명, 2005년 893명, 2006년 7월말까지 469명) 나타났다.

한편 경우회는 이러한 시위양태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이들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진전 및 서명 운동(10월 중순 부산에서 3차 사진전 예정) 을 가지는 등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각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자!

- 법원은 판결 · 검찰은 공소제기 · 경찰은 수사를 -

—— 성 홍제 (독일 튀빙엔 대학 경찰법 박사)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법원-검찰-변호사계에 갈등이 유발되었다. 이러한 갈등에 현직 경찰서장이 23일 경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불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 검사는 한 일간지에 '수사받는 법'을 10회 연재키로 하고 지난 11일 첫 기고문을 실었다. 그 파장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금태섭 검사는 피의자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실었을 뿐이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분석한 것처럼 금태섭 검사의 기고문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는 자체 회의를 열고, 금태섭 검사에게 기고를 중단하거나 제 2, 제 3의 연재를 실을 경우 미리 검토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법대생들도 알고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검찰청에서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은 조서가 법정진술보다 우위에 설수 있느냐,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구두주의와 직접주의를 포함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청내에 공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검찰청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모른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일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변호사계가 법원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는 원래 법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무죄를 이끌어 내려하는 반면, 검사는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하려는 존재로 상호 대립각에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과 변호사계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나라의 소송구조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의 가치가 당사자들의 법정 진술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류재판에 가깝다.

그럼으로써 검찰은 서류상으로 거의 완벽하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물론 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시스템상에서 사건조사는 형사부에서, 공판은 공판부에서 전담하게 되고, 사건조사검사와 공판검사가 일치하지 않아도 법정에서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하는데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공판중심주의로 갈 경우, 검찰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뿐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등 업무부담이 증가될 것임은 명확하다.

그래서 검찰은 서류재판을 고집하는 것이고, 이는 최근 법조비리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협박 등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검찰의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보여준 반응은 업무적 측면에서는 이해되나,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면 피의자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다.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대법원장의 발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방편인 '증거분리 제출제도'를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한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옳다고 수긍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변호사계 역시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변호사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법정에서 검찰을 상대로 명확한 사실확인 · 치열한 법정공방 · 객관적 증거제시 등을 통해 피의자가 무죄임을 밝히는 존재이므로 논리상 검찰의 반대편에 서야 되는데 검찰을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치열한 법정공방보다는 전관예우, 인맥 등을 통해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변호사계 역시 공판중심주의보다 서류재판을 지향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은 된다.

〈2면으로 계속〉

國民 편익 위한 수사권조정,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전 근대적인 二重搜査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검 · 경 간의 구체적 대안협의와 여 · 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 · 야 국회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1개월 동안이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 · 警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정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 · 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 · 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 · 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밥그릇 다툼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大韓民國在鄕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